

특정감사

# 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—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—

2022. 12.

# 1. 일람표

(단위 : 천 원)

번호	소관	건명	행정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			
			시정	주의	회수	금액	감액	금액	추징	금액
계		1건	1	0	0	0	1	230,842	0	0
1	○○○○과	●●●●●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	1	0	-	0	1	230,842		

# 경 상 북 도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 
 소 관 청 □□□□군  
 관 계 부 서 ○○○○과  
 내 용

□□□□군 ○○○○과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“○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”을 추진하였다.

[표] 공사현황

공 사 명	위 치		사업량	도급액 (백만원)	계약일	사업기간	도급자	비고
	읍면	리동						
○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	☞☞	●●	교량개체 (B=6m) L=119m	3,533	2021.4.21.	2021.4.28. ~ 2022.11.3.	(시공사) ●●토건(유) ⊗⊗⊗  (건설사업관리자) ●●엔지니어링(주) ⊠⊠⊠	

### 1.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3장 제2절 및 「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」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의하면 계약금액(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)이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(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)이 계약금액의 10%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·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“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”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의 10%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경상북도에 설계변경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이에, 위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 2,881,071천 원에서 3,497,027천 원으로 변경되어 계약금액 10%이상 증가된 사실을 인지하여 설계변경 원가심사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2. 5. 4. 사전협의 차 출장결재를 득한 뒤 경상북도 감사관실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한 후 1차 사전검토의견(설계내역 단가 조정 등)을 온나라 메일을 통해 회신 받았다.

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심사부서 의견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설계서 및 실정보고 서류 검토 없이 원안대로 총괄 1회 및 총괄 2회 변경 금액 652,014천원 중 230,842천원(제경비 포함)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도급자와 변경 계약한 사실이 있다.

## 2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 및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987호, 2020. 12. 16.)」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,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·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

또한, 같은 지침 제97조(설계변경 관리)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·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가. 실정보고 및 설계서 검토 업무 부적정

(주)○○○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“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”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대, 교각 설치구간 지반이 호박돌, 자갈 전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초 기초 파일 항타 공법을 케이싱 삽입 후 강관말뚝을 압입하는 SDA공법에서 천공과 강관말뚝을 동시에 압입하는 PRD공법으로 공법 변경 실정보고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설계 내역 변경 시 당초 SDA공법에 사용되는 케이싱튜브 설치 및 철거품을 제외하지 않았으며 강관말뚝 근입 길이에 대한 항타 기록지 미확인 등 물량 변경을 정산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추진하여 45,212천원(순공사비)을 과다 계상하였다.

#### 나. 공사 중 안전관리 업무 현장확인 등 소홀

(주)○○○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시설(시트파일) 띠장 내 철골보 부분의 전단보강과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강재(스티프너) 288EA 미설치, 가시설 구조물의 변위, 토압 및 수압의 변화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며,

그리고 설계변경 실정보고 시 가시설(시트파일) 근입깊이 산정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의대로 설정 후 추진하여 자칫 가시설이 전도되어 붕괴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간과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, 준공 전 보강재(스티프너), 계측기 미설치 부분에 대해 설계서 검토 없이 사업비 58,019천원(순공사비)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#### 다. 공사감독 업무 등 현장 확인 소홀

(주)○○○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용 가축도에 사용되는 톤마대(732EA)와 파형강관(84m)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며 가시설(시트파일) 압입 전 시공하는 가이드빔(교대 A2구간)을 미설치하는 등 실정보고 및 사업비 54,335천원(순공사비)을 감액 처리하지 않고 공사감독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.

또한 「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」에 따르면 시공상세도 작성은 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,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,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감리원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런데도 “○○○○○○○○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”을 추진하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시공상세도는 작성이 되어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절차(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검토확인)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공상세도 작성비는 공사 원가계산서 내 사후정산(PS)단가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8,000천원을 정산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# 3.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 지도·점검 등 기본업무 수행 부적정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의2(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) 제6항 및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공사의 계획·설계·발주·건설사업관리·시공·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, 건설사업관리,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,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과다계상 하여 변경계약을 추진하였으며, 건설

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이 부적정 하였음에도 공사를 추진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기본임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**조치할 사항 ㉹㉹㉹㉹**

-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,
- ② 건설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해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 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
-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0,842천 원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)